

공고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11-27	담당부서	주택과	최철민
고시공고구분	공고(입법예고)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1290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			
내용	<p>1. 제안이유</p> <p>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</p> <p>나.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</p> <p>2. 주요내용</p> <p>가.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함(안 제1조)</p> <p>나. 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</p>			